
고려 전기 사면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윤 훈 표
(연세대학교)

머리말

- I. 태조~성종대 실시에서의 토대 마련과 행형 체계의 보완 기능
- II. 목종~현종대 실시의 성격 변화와 행형에서의 公務 관련 의 비중 증대
- III. 숙종~의종대 실행상 의 문제점 과 행형 체계 의 혼란 조성

맺음말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2157).
- 투고일: 2018. 5. 20. ● 심사일: 2018. 5. 23. ● 게재확정일: 2018. 6. 3.
- <https://doi.org/10.31218/TRKH.2018.06.130.49>

요약

고려 전기의 사면 실시 특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그에 입각하여 행형 체계 수립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사면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벌을 주는 처벌과 함께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를 이루면서 행형 체계를 지탱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사면은 행형 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실행할 때에는 여러 방면으로 당시의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했다.

고려 전기에는 통치 체제의 개편이 추진되면서 행형 체계도 함께 정비되었다. 그런데 행정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했던 시기에 사면이 자주 실시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내재되지 않았다면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전기의 하한선을 의중대로 설정했다. 그 때까지는 동일한 원리로 움직였는데, 사면권의 핵심 국왕의 고유한 특권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조 때부터 실시된 전반기 사면의 전체를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의거하여 【표】로 정리했다. 그 명세를 동기, 종류, 장소, 내용과 범위, 은전 등으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작성했다. 다시 3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파악했다.

제1기를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로 설정했다. 기간 중 실시의 70% 정도를 점했던 성종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송·거란의 책봉을 받고 실시한 것은 성종대가 유일하다. 행형 체계의 정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도 중국·신라 등의 형태를 참고하여 사면 실시의 기본 골격을 갖추었다. 책봉 받고 외방에 행행하면서 사면하는 것을 통해 국내외의 정연한 질서 속에서 고려 왕실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전제로 체계적 운영을 도모했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중앙집권체제의 토대가 되는 신분제의 동요를 막고자 사면을 실시하여 소외되거나 탈락된 일부 지배층을 구제했다. 경제적 시혜나 유교윤리 창달에 의한 빈민 구제 등의 은전

고려 전기 사면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을 베풀어 외방까지 혜택이 미치도록 했다. 이로써 사회적 불평·불만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려 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시 한창 정비 중이었던 행형 체계를 다른 각도에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제2기는 목종대부터 현종대까지로, 성종대에 이룩된 기본 골격을 토대로 실시되었다. 현종대에서 문종대를 거치면서 개편이 이루어졌다. 책봉을 받았다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태후 책봉 등 왕실 행사로 인해 사면이 단행되었다. 이로써 고려의 주체적 입장이 강조되었으며 실제 혜택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현종대부터 사면할 때 공·사죄를 분간하기 시작했다. 범행 의도에서 공무원의 사사로움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처벌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공공 부문의 성장과 함께 관료제의 운영이 사회 저변에까지 침투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사면에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행정의 운영에도 널리 확산되었음을 의미했다. 공공 부문의 성장은 관료들의 지위 안정을 전제로 한다. 경제적 대우를 확실히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부담은 늘었다. 이는 사면의 실시에도 영향을 끼쳐 관인들의 구제 조치는 증가했으나 경제적 시혜나 유교윤리 창달을 위한 구휼 등은 축소되었다. 이런 현상들은 행형에서의 공무 관련 사항들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나타났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3기는 숙종대에서 의종대로 앞선 시기보다 평균실시 횟수가 늘었다.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자주 실시되었다. 이 시기 만연했던 집권층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불만을 해소시켜 다른 방면으로 관심사를 돌리기 위한 비상조치의 하나로 사면을 택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제도와 운영면에서는 이전 보다 정비되었다. 사면 실시가 국가 의례인 오례 가운데 가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것을 거행하면서 착용했던 국왕의 복식도 정해졌다. 절차나 과정 모두 완숙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배층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면을 자주 실시하면서 내린 은전에서 좌천되거나 침체된 관인의 구제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반면에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나 불균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던 경제적인 시혜는 감소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균형이 무너졌다. 균형의 상실이 사면의 실시를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의 상징처럼 만들었다. 불신과 불화를 조장해서 ‘억울함이 퍼져서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그것은 안으로 체제를 동요케 하고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주제어 : 사면, 고려 전기, 행형 체계, 성종, 은전

머리말

본고에서는 고려 전기에 실시되었던 사면의 특징을 시기별로 파악하고 그에 입각하여 당시 행형 체계 수립의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¹⁾ 벌을 주는 처벌과 함께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를 이루면서 행형 체계를 지탱하고 있다.

사면은 성격상 행형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에는 항상 여러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죄짓고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으로써 형정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

고려 전기에는 후삼국 통일 이후 전면적인 통치 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행형 체계에 대한 정비 작업도 진행되었다. 이때 단순히 이전의 것을 승계하거나 외래 문물을 수용하는 것에서 탈피해 새로운 단계로의 성장을 위해 제도와 운영 체계를 갖추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사면이 자주 실시되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현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³⁾ 무슨 이유로 운영 체계

-
- 1) 일상의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 본고에서는 ‘고려 전기’라는 특정 시기의 사면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慮囚 즉 錄囚와 赦 등으로 구분해서 전자는 죄수를 보살피 주는 것으로 후자는 拘禁囚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석방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충렬왕 이후 원의 간섭을 받은 뒤로는 주로 宥赦로 표기되었다고 한다(韓容根, 1986, 「高麗時代의 赦에 關한 研究」, 『慶熙史學』 12 · 13, 29 ~ 30쪽).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후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자연히 전자에 대한 것은 대부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다만 후자와 관련되는 것에 국한하여 다루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 2) 赦란 법률적 규제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완화내지는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런 초법적 조치를 시행하는데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곤란하다(任大熙, 1990, 「恩赦實施를 通하여 본 唐代政治」, 『大丘史學』 40, 3쪽).
 - 3) 태조에서 의종대까지 253년간 137회의 사면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다소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1.8년에 1회꼴로 단행되었다. 그런데 실시 횟수에서 기존

를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에 그 간의 성과들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나아가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닌 것을 빈번하게 단행하였던 까닭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양자는 항상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대한 분석이 다른 쪽의 이해에도 기여할 것이다.

고려 전기를 대상으로 하되, 일단 기존의 시기 구분, 특히 법제사의 구분론에 입각하여 무신 정권 등장 이전인 의종대를 하한선으로 정하였다.⁴⁾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했는데, 1차로 행형 체계의 정비 작업이 본격화되었던 성종대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2차로 숙종대부터 의종대까지를 하나의 단일한 정치구조로 묶을 수 있다는 견해⁵⁾를 받아들여 역시 별도의 시기로 설정했다. 이렇게 해서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를 제1기로, 목종대부터 현종대까지를 제2기, 끝으로 숙종에서 의종까지를 제3기로 명명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각 시기별 실시의 특징을 파악하고 더불어 행형 체계의 수립과 그 운영의 전개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면 실시의 전제가 되는 법제와 형정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었다.⁶⁾ 그리고 사면도 전 시기에 걸쳐 개설적이기는 하지

논고의 수치가 다르다. 이는 설정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俞成國, 1997, 「高麗時代の 赦免制度」, 『延世法學研究』 4, 35~7쪽 참조).

- 4) 辛虎雄, 1995, 『高麗法制史研究』, 國學資料院, 252쪽. 그 때까지는 동일한 원리로 움직였는데, 사면권의 핵심인 국왕의 고유한 특권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위의 글, 343쪽). 반면 무신 정권의 수립 이후에는 왕권이 흔들리면서 사면 실시의 성격도 바뀌었다. 이와 달리 원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던 원종대부터 후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俞成國, 1997, 「高麗時代の 赦免制度」, 『延世法學研究』 4, 37쪽).
- 5) 朴宗基, 1992, 「12세기 高麗 政治史 研究論」,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66~8쪽. 이는 비단 일부 정치사에 국한된 시각이 아니다. 고려 전시기의 사면 문제를 검토하면서 특별히 예종대 실시된 것에 중점을 두고 파악한 연구도 있다(韓容根, 1986, 앞의 논문). 그만큼 이 시기가 전기 내에서도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 6) 이에 관한 성과들은 김호동, 2007, 「고려율령에 관한 연구현황」, 『民族文化論叢』 37에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그 이후에 채웅석, 2009, 『『고려사』 형법지 역주』,

만 여러 측면에서 상세하게 정리되었다.7) 역사학 이외 법사학 분야에서도 제출되었는데,8) 상호 교류가 없었던 탓인지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이들을 통해 고려 일대 사면 실시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9) 그러나 각 시기의 구체적인 특징과 그것이 행정, 나아가 법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바가 없지 않다. 특히 체계적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서히 내부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던 전기에 단행된 사면들의 변화 추이와 특징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고려 특유의 형벌인 歸鄉刑, 充常戶刑을 다루면서 사면 문제가 아울러 검토되었는데, 그것에는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다.10) 그와 유사한 형태로 流刑을 검토하면서 그에 대한 사면 실시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었다.11) 이는 유형이 지닌 독특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데, 경우에 따라

신서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10,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경인문화사 등과 같은 중요 업적들이 계속해서 간행되었다. 이에 힘입어 법제와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은 대개 정리되었다. 그런데 고려의 독자적인 율은 실재했지만 전시기에 걸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주목된다(鄭肯植, 2002, 「고려시대 居喪行爲의 규제-고려율을 중심으로」 『二十一世紀 韓國 商事法學의 課題와 展望:心堂宋相現先生華甲紀念論文集』, 박영사). 이 같은 견해에 대해서도 세밀한 천착이 필요하다.

- 7) 韓容根, 1986, 앞의 논문; 辛虎雄, 1992, 「高麗時代의 赦免制度」 『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95, 『高麗法制史研究』, 國學資料院, 재수록.
- 8) 俞成國, 1997, 앞의 논문.
- 9) 위에 소개된 기존의 성과들에서 중점을 둔 것은 실시의 동기에 관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나름의 분류를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런 선행 업적들에 의거하여 시기별 특징을 정리했다. 자연히 세부적인 사실들은 앞서 소개한 연구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10) 文炯萬, 1964, 「麗代歸鄉考」 『歷史學報』 23; 北村秀人, 1976, 「高麗時代의 歸鄉刑·充常戶刑について」 『朝鮮學報』 81; 浜中昇, 1980, 「高麗における唐律の繼受と歸鄉刑·充常戶刑」 『歷史學研究』 483; 蔡雄錫, 1983, 「高麗時代의 歸鄉刑과 充常戶刑」 『韓國史論』 9, 서울大 國史學科; 박은경, 1992, 「高麗時代 歸鄉刑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79.
- 11) 金난옥, 2003, 「高麗前期의 流配刑」 『韓國史研究』 121; 채웅석, 2012, 「고려 말 권근

서는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곧 바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다.

한편 사면과 매우 유사한, 넓은 범주에서는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恤刑¹²⁾을 다루면서,¹³⁾ 한편 통치 원리이자 국가 운영의 틀로 활용되었던 「月令」의 시행과 결부시켜 이해하기도 했다.¹⁴⁾ 특히 통치 이념으로 기능했던 유교 정치사상을 다루면서 그에 입각하여 실시되었던 사면을 검토하기도 했다.¹⁵⁾ 아울러 법제사나 형정을 검토했던 논저들 중에서도 직, 간접적으로 사면에 대해 언급했던 사례가 있다.¹⁶⁾ 비록 간략하게 서술되었지만 전체의 운영 체제 속에서 그 위상을 짐작하는데 유용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과들에 기반을 두고 전기를 대상으로 하되 시기를 세분화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제 I 장에서는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의 실시를 다루면서 그 특징적 양상과 함께 당시 행형 체제 운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목종대부터 현종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현종대에서 문종대를 중심으로 행형 체제의 개편과 함께 실시되었던 사면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려고 한다. 이는 앞선 성종대에 이룩된 성과들에 토대를 두면서도 다소 다른 방향을 추구했던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다. 끝으로 III 장에서는 숙종대에서 의종대까지 실시했던 것들의 성격을 분석하되 체제 정비의 완숙함을 보

(權近)의 유배(流配)·종편(從便) 생활과 교유, 『역사와 현실』 84; 오희은, 2016, 「고려시대 "연고지 유배형"의 성격과 전개」, 『韓國史論』 62 서울大 國史學科.

- 12) 홀령은 형벌을 신중하게 집행하는 것, 형벌을 赦하여 減刑·停刑해 주는 것, 죄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채웅석, 2009, 앞의 책, 529쪽).
- 13) 李世賢, 1975, 「麗代 諸王의 天變觀과 恤刑」, 『群山大學論文集』 8-1; 石川重雄, 2007, 「高麗時代의 恤刑-慮囚·疏決·獄空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37; 진영섭, 2012, 「唐宋元·高麗의 恤刑 立法原則과 刑政認識-홀령사상의 原流와 관련하여」, 『중국사연구』 77.
- 14) 채웅석, 2009, 「고려시대 刑政의 '原情'認識과 「月令」 활용」, 『한국중세사연구』 27; 한정수 편, 2010, 『월령과 국가』, 민속원, 재수록.
- 15) 李熙德, 1977, 「高麗時代의 天文觀과 儒敎主義 政治理念」, 『韓國史研究』 17.
- 16) 대표적으로 辛虎雄, 1995, 앞의 책; 韓容根, 1998, 『高麗律』, 書景文化社. 등을 들 수 있다.

여주는 것과 동시에 안에서 혼란과 동요의 요인이 싹트는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으로 전기에 실시된 사면의 특징을 시기별, 단계별로 해명하는 가운데 그의 전제가 되었던 행형 체계의 변화상과 결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실시 동기 및 내용과 범위, 그리고 이들과 특별하게 결부되었던 은전의 추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은전의 경우 사면의 본 내용보다 더 방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별도로 독립시켜 다룰 필요가 있다.¹⁷⁾ 여기서는 동기와 내용 및 범위, 그것과 연결된 행형 체계의 변화상과 관련해서 그 추세를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I. 태조~성종대 실시에서의 토대 마련과 행형 체계의 보완 기능

태조대에서 성종대까지 실시된 사면이 아래의 【표 1】에 정리되었다. 이는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나머지 시기의 것도 동일한 원칙으로 만들었다. 특히 【표 1】에서의 번호는 태조대부터 의종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한 ‘일련 번호’로 고유한 것이다.

17) 본래 赦文, 특히 唐代에 확립된 것에는 減刑 뿐만 아니라 官人待遇·經濟救濟措置, 倫理秩序暢達等の 恩典과 赦의 실시에 따른 부대 조치 등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은전에 더 큰 비중이 두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恩赦’라고 한다(任大熙, 1990, 앞의 논문). 그런데 본고에서는 ‘감형’ 부분을 위주로 다루었고, 그 밖의 은전 등은 실시 동기 및 내용·범위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여 검토했다. 아울러 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보다 그 추세를 살피는데 힘썼다. 이미 예종대의 은전에 대해 별도로 검토된 바가 있다(김신해, 2015, 「고려 예종대 ‘恩賜’ 정책의 유형과 정치적 성격」, 『한국사학보』 58). 그리고 蔭紱와 관련해서는 朴天植, 1991, 「高麗土族의 形成·發展과 階層構造(下)」, 『國史館論叢』 29에 간략히 언급되었다.

【표 1】 태조~성종대의 사면¹⁸⁾

번호	선포연월	동기	종류	장소	내용 및 범위	은전
1	太祖1.8.	卽位	大赦			②
2	定宗1.1.	天鼓鳴(災變?)	赦			
3	정종3.9.	不豫(病)	赦			
4	光宗23.8.		赦			
5	景宗卽位.5.	卽位	大赦		(還流竄 放囚繫 洗痕累)	①②
6	成宗卽位.8.	卽位	大赦	威鳳樓		①②
7	성종2.3.	冊封(宋)	赦		自大平興國八年三月二十二日昧爽前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犯罪人 相鬪殺以下罪 無輕重 皆悉赦之	
8	성종4.5.	冊封(宋)	赦			
9	성종7.10.	冊封(宋)	赦		赦絞罪以下	①②
10	성종8.9.	星變	赦			①②③
11	성종9.6.	冊封(宋)	赦		赦絞罪以下	①
12	성종9.10.	行幸(西都)	出獄		扈從臣僚及西京等諸州郡 見禁囚徒 十惡外 絞罪以下 並令出獄	①②③
13	성종10.4.	宋→藏經	赦			
14	성종13.4.	親禘	大赦			①②
15	성종15.3.	冊封(契丹)	大赦			
16	성종16.8.	行幸(東京)	赦			①②③

18) 선포연월에서 태조.1.8.은 태조 1년 8월을 의미한다. 동기는 실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종류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서 기술된 것 그대로 전제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에만 ‘赦’라고 기록된 것들도 있다. 그 경우에도 모두 赦로 표기했다. 내용 및 범위도 『고려사』 등의 기록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은전의 경우 이미 唐代에 거의 정식화되었는데, 이 역시 고려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분류하면 ① 좌천되거나 침체된 官人의 구제 조치, ② 경제적인 시혜, ③ 유교윤리 창달, ④ 승려나 도사의 배려, ⑤ 老人의 관직 수여, 그리고 ⑥ 고려 특유의 山川海瀆 등의 爵號昇級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여러 종목으로 세분화되었다(山川海瀆의 爵號 등을 제외하고는 任大熙, 1990, 앞의 논문에 의거해서 정리했다). 본 표에서는 전체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곤란해 관련 사실이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 원숫자만 은전 칸에 표시했다.

위 【표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성종대와 그에 앞서 재위했던 임금 들 때와는 여러 측면에서 많이 달랐다. 따라서 서로 대비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시 횟수에서 총 16회 가운데 11회를 차지할 만큼 성종대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동기와 장소, 내용 및 범위 등에서도 차이가 컸다. 제도와 문물의 정비가 본격화, 체계화되기 시작했다고 일컬어지는 시기에 사면이 유달리 잦았으며, 그에 앞서 재위했었던 국왕들 시기와 차이가 컸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형정 정비에 열중하던 시기에 죄수를 번번이 풀어주었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하 성종대를 중심으로 이 시기 사면 실시의 특징과 함께 행형 체계의 정비 작업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동기면에서 성종대 송·거란 포함하여 책봉이 5회에 달했다. 13년의 송에서 藏經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시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6회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5회는 行幸이 2차례, 즉위, 성변, 親禱 각각 1차례였다. 그만큼 책봉이 두드러진다. 더구나 책봉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면을 실시했던 것은 성종대가 유일하다.¹⁹⁾

두 번째 종류에서 大赦, 赦, 出獄²⁰⁾으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사면의 동기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는 내용 및 범위, 은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즉위와 관련해서 대사가 단행되었는데 새로운 군주의 등극이라는 점에서 당연했다. 문제는 2대 혜종, 3대 정종, 4대 광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왜 사면이 실시되지 않았는가라는 점이다.²¹⁾ 정치적으로

19) 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83쪽.

20) 본래 大赦, 常赦(赦), 曲赦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2번의 出獄은 曲赦로 표현되어야 하며 실제 내용에서도 그것에 합당하다는 것이다(俞成國, 1997, 앞의 논문, 4~10쪽). 그럼에도 그렇게 표기되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1) 3대 정종도 즉위를 이유로 사면을 실시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대신 30대 충정왕 때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韓容根, 1986, 앞의 논문, 34~5쪽). 정종의 경우 『고

복잡한 시기였음에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어떤 숨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더 이상의 천착이 곤란하다.

즉위 이외에 대사가 14, 15번에서 보다시피 두 차례 더 단행되었다. 그런데 14번 親禘의 경우 太祖·惠宗·定宗·光宗·戴宗·景宗의 神主를 大廟에 祔하면서 행했던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된다.²²⁾ 하지만 15번 거란의 책봉을 받으면서 대사했다는 것은 앞서 송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서 어긋나 보인다.²³⁾ 송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1번 성종 9년 6월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아 사를 실시했다.²⁴⁾ 불과 몇 달 뒤인 12번의 성종 9년 10월에 서도로 행행했을 때에도 사면을 실시했는데, 여기서는 출옥이라고 표현했다.²⁵⁾ 문구상 출옥이라고 표기했을 뿐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사와 대등하였다. 이는 성종의 입장에서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고서 사를 내렸는데, 불과 몇 달 뒤 서도에 행행해서 동급의 사를 선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자연히 출옥으로 격을 낮추어 단행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면 실제로 격을 낮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국왕의 품격이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 행행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왕의 위신을 외방에까지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친히 나아가서 사면하는데, 격을 낮춰 출옥이라고 표현하여 선포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행행의 근본 의도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컸다. 더 이상 출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곤란했다.

려사』의 기록에는 ‘是歲天鼓鳴赦’라고 되어 있다(『고려사』 권2, 세가 정종 1년). 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22)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13년 4월 갑진

23)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15년 3월 병신

24)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9년 6월 경인

25)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9년 10월 갑자

마침내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고서 대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내용과 범위에서는 사에 비해 두드러진 바가 없었다. 그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고려사』 등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로 인해 16번 성종 16년 8월 東京으로 행행했을 때에는 출옥 대신에 사를 선포했다.²⁶⁾ 이런 식으로 국왕의 위상이 외방에까지 널리 각인되도록 했다.

세 번째 장소로, 성종은 즉위시의 대사를 이전과 달리 威鳳樓에 나아가 선포했다. 이는 중국의 방식을 채용한 것으로 후대에 건물명, 장소 따위가 바뀌었으나 형식은 유지되었다. 그것은 사면의 선포를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는데, 이를테면 책봉 의식이 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궁정 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宮城門樓에 나가서 공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²⁷⁾ 특히 태조가 후백제를 통합하고 돌아와서 문무백관과 백성들로부터 朝賀를 받았던 위봉루에 나아가 거행하는 것이 금상첨화라고 여겼을 것이다.²⁸⁾ 다수에게 널리 전파시키고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면의 포고 장소도 중요했다.

네 번째 내용과 범위에서 5번 경종 즉위시 단행했던 대사²⁹⁾와 성종대의 그것들은 상당히 달랐다. 이는 전자의 동기가 통상적인 것들과 크게 달랐던 것에서 기인한다. 신료들의 숙청에 힘썼던 광종이 죽고 태자, 곧 경종이 즉위하자 대사를 행하여 유배 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며 연좌된 자들을 벗겨주고 침체된 자들을 발탁하고 官爵을 회복시켜주고 부채를 덜어주고 租調를 경감하고 假獄을 헐고 讒書

26)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16년 8월 정유

27) 任大熙, 1990, 앞의 논문, 57~8쪽.

28) 『고려사』 권2, 세가 태조 19년 9월

29) 『고려사』 권2, 세가 경종 즉위년 5월

들을 불태우니 中外가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다.³⁰⁾ 이는 광종대의 정치 성과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취했던 조치로 보인다. 일반적인 왕위 계승 상황은 아니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욱 심각한 사태가 초래되었다. 광종 때 참소를 당했던 사람의 자손들에게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자 서로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다시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때 執政을 지냈던 王誨이 복수를 핑계 삼아 속임수로 태조의 아들인 天安府院郎君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왕선을 쫓아내고 함부로 복수하는 것을 금지했다.³¹⁾ 일시적이라도 사적인 복수를 허용했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보기 힘든 현상이었다.

짧은 기간이었다고 해도 큰 혼란이 발생했던 것은 결국 체제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경종의 뒤를 이었던 성종은 즉위하면서 역시 대사를 단행했는데 함께 내렸던 은전을 보면, 3년간의 역을 면제하고 조세의 반을 감해주고 문무관의 품계를 한 등급씩 올려주라는 것이다.³²⁾ 앞선 경종 즉위시의 사면과 비교해서 사뭇 구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용과 범위를 보면, 7번 성종 2년 3월 송의 책봉을 받은 뒤 ‘自大平興國八年三月二十二日昧爽前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犯罪人 相關殺以下罪 無輕重 皆悉赦之’라고 했다.³³⁾ 대평흥국은 송 태종의 연호로 8년은 성종 2년(938)에 해당한다. 그 내용은, 3월 22일 새벽 이전에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판결을 받았거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범죄자 가운데 서로 싸우다 죽인 죄 이하는 경중을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사면하라는 뜻이다.

30) 『고려사절요』 권2, 경종 즉위년 5월

31) 『고려사』 권2, 세가 경종 원년 11월

32) 『고려사절요』 권2, 성종 즉위년 8월

33)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2년 3월 무인

이는 赦文의 정형화된 문장으로 중국의 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³⁴⁾ 이미 신라 문무왕 9년(669)에 위의 것과 유사한 문법으로 사문이 반포되었다.³⁵⁾ 그런데 성종대 책봉을 받은 뒤에 비로소 그 같은 법식의 사문을 반포했다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경종도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나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³⁶⁾

한편 성종은 송의 책봉을 받고서 2년이 지난 뒤 8번처럼 4년 5월에 또 받았는데, 이때에도 사면을 실시했다. 그 때 선포했던 赦文에서는 ‘赦書日行五百里 敢以赦前事言之者 以其罪 罪之’라면서 끝을 맺었다.³⁷⁾ 이는 赦書를 하루에 500리씩 신속하게 전달하고 감히 사면 이전의 일을 말하는 자는 (사면된 자의) 죄로 죄줄 것이라는 의미였다.³⁸⁾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赦書日行五百里’인데 이 역시 唐制를 수용한 것이다.³⁹⁾

결과적으로 내용과 범위, 그리고 赦文의 書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것, 특히 당의 제도를 수용했는데,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고서 실천에 옮겼다. 국내외의 정연한 질서 속에서 실시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정연한 질서 구축을 전제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여겼다.

끝으로 은전을 통해서도 체계적 실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 후대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그 때 사면 실시와 관련해 은전 문제의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던 이가 최승로였다.

34) 任大熙, 1990, 앞의 논문, 8쪽.

3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9년 2월 22일. ‘自總章二年二月二十一日昧爽已前 犯五逆罪死已下 今見囚禁者 罪無小大 悉皆放出 其前赦已後 犯罪奪爵者 並令依舊 盜賊人 但放其身 更無財物可還者 不在徵限…’

36) 『고려사』 권2, 세가 경종 원년 11월

37)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4년 5월

38) 沈載錫, 2002, 앞의 책, 85쪽.

39) 任大熙, 1990, 앞의 논문, 7쪽. 이 논문에 따르면, 이 속도는 중국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가능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성종 1년 6월에 올린 상소문에서 ‘三韓功臣의 자손은 宥旨를 받을 때마다 포상하고 등용한다고 하면서도 爵을 받은 자가 없고 皂隸에 섞여 있어 新進의 무리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관계로 원망과 탄식이 일어나고 있다. 또 광종 말년에 조정의 신하를 죽이고 내쫓아 世家의 자손이 가문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에 누차 내린 恩宥에 의거하여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고 庚子年(태조 23) 田科(役分田)를 받은 자와 三韓 통합 후에 入仕한 자도 역시 헤아려 階와 職을 준다면 억울함이 퍼져서 재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⁴⁰⁾

위 최승로의 상소에서 ‘누차 내린 은유’란 대개 그 전에 내린 사면과 은전을 가리킨다. ‘恩宥’가 ‘恩赦’와 같은 뜻이며 마지막의 ‘억울함이 퍼져서 재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冤屈得伸而災害不生矣]’라는 대목은 바로 赦文의 전형적인 문장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광종 때의 숙청으로 희생당했던 세가의 자손들을 직접 거론하는 것으로 미루어 경종 때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건의했다.⁴¹⁾

그러나 최승로가 상소에서 광종 때의 피해자와 경종 때 조치의 미흡함만 거론했던 것은 아니었다. 三韓功臣의 자손들과 役分田을 지급받았던 통합시의 조신·군사, 삼한 통합 후 入仕者들도 구제할 것을 건의했다. 그들은 당시 지배층 가운데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자들이었다.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식은 恩宥, 즉 恩赦였다. 은사에서 사면은 형을 감면하는 것이지만 은전에는 지배층 가운데 소외되었거나 탈락된 자들을 원상회복시켜 주는 것도 포함되었다. 만약 그런 부류들이 누적되면 지배층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열 현상의 악화

40)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년 6월

41) 상서문에서의 ‘누차 내린 은유’란 그 전에 내린 사면과 은전을 가리킨다. 따라서 소급 적용할 것을 건의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곤란했을 것이다. 아마도 장차 행할 사면에서 은사를 내려 앞서 지적했던 인물들을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해된다.

에 따른 신분제의 동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최종로는 은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표 1】에 의하면 성종 이전의 사면에서도 은전을 베풀었다. 하지만 태조 때의 ‘其免民三年租役 流離四方者 令歸田里’⁴²⁾는 사면에서의 은전이 기 보다 개국에 따른 민심 수습책의 하나로 보인다. 그리고 경종 때 ‘洗痕累 拔淹滯 復官爵 蠲欠債 減租調 毀假獄 焚讒書’한다고 선포했지만⁴³⁾ 결과적으로 광종 때의 피해자조차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다. 즉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반면에 성종대는 사면이 잦았을 뿐만 아니라 은전 등의 내용도 풍성했다. 특히 12번 서도,⁴⁴⁾ 16번 동경에 행했었을 때⁴⁵⁾ 사면 실시의 은전을 통해 외방에까지 널리 확대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여유가 없어 세밀한 분석이 곤란하지만 이들을 통해 최종로의 상소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을 것이다.⁴⁶⁾

성종대 행형 체계의 정비 작업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를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중앙집권체제의 기초를 굳건히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배층의 일부가 탈락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벌해야 하나 누적됨으로 인해 신분제가 동요할 수도 있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때 은전을 베푸는 것이 필요했다. 즉 적당한 시점에 은전을 베풀어 지배층 중에 소외되는 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했다.

42) 『고려사』 권80, 식화지 3 진흥 은면지제 태조 1년 8월

43) 『고려사절요』 권2, 광종 26년 5월

44)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9년 10월 갑자 · 『고려사절요』 권2, 성종 9년 10월

45)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16년 8월 을미 ·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6년 8월 을미

46) 이에 대해 미흡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金哲堧, 1990,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 『韓國史學史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201~3쪽).

결국 중앙집권체제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행형 체계에 대한 정비는 필수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신분제의 동요는 차단해야 했다. 그것은 사면 실시로 구체화되었다. 나아가 이는 행형 체계의 정비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일부나마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II. 목종~헌종대 실시의 성격 변화와 행형에서의 公務 관련의 비중 증대

목종대에서 헌종대에 이르는 시기의 사면 실시는 【표 2】로 정리하였다.⁴⁷⁾

【표 2】 목종~헌종대의 사면

번호	선포연월	동기	종류	장소	내용 및 범위	은전
17	穆宗즉위.12	卽位	赦	威鳳樓		①③⑥
18	목종1.4.	謁廟	赦			
19	목종2.10.	行幸(鎭京)	赦			①②③
20	목종4.11.	行幸(中原府)	赦			①②
21	목종5.4.	謁廟	赦			
22	목종7.4.	行幸(鎭京)	赦		杖罪以下	②③⑥
23	목종9.6.	災變(震)	赦			①②③ ④⑥
24	목종10.10	行幸(鎭京)	赦		流罪以下	②⑥
25	顯宗즉위.4	卽位	赦			①② ③⑥

47) 【표 1】에서 밝힌 원칙대로 정리했으며 은전도 ① 좌천되거나 침체된 官人의 구제 조치, ② 경제적인 시혜, ③ 유교윤리 창달, ④ 승려나 도사의 배려, ⑤ 老人의 관직 수여, 그리고 ⑥ 고려 특유의 山川海濱 등의 爵號昇級 등의 동일한 원숫자로 표시했다.

고려 전기 사면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26	현종즉위.5.		赦		徒罪以下	①②
27	현종4.8.	謁陵	赦			
28	현종5.4.	親禱	赦		流罪以下	
29	현종5.12.		赦		流罪以下 減諸死罪杖流	①②③ ④⑥
30	현종7.7.	蝗害	出獄		徒流以下 取保出獄	
31	현종8.12.	謁陵	赦			
32	현종9.9.		赦		死罪者免死 仗流遠地 赦流以下	
33	현종9.12		赦		流罪以下	②
34	현종18.4.	謁廟	赦		流以下	
35	현종21.6.		特赦		殊死二罪, 流遠地, 餘皆原之	②
36	현종22.1.	親耕	赦		流罪以下	③
37	현종22.5		赦		公罪徒以下	②
38	德宗즉위.6.	卽位	赦	神鳳樓 揭雞竿于毬庭		
39	덕종1.9.		赦		徒罪以下48)	
40	덕종2.10	給享	大赦		除不忠不孝坐贓奸盜外 流罪以下咸赦之 斬絞配有人島 曾流者量移 收贖者免放	
41	덕종3.7.		減死		其毆家主及謀殺人強盜者 杖流無人島 縱犯強盜傷人 持杖以下罪 竄有人島	
42	靖宗즉위.11.	卽位	大赦	神鳳樓		
43	정종1.3.	王妃冊封	赦		徒罪以下	
44	정종1.7.	先王憂服未闋	(減死)		犯斬罪者 杖配無人島 絞罪者 杖配有人島	
45	정종2.1.		原免		公徒私杖以下及諸微贖者	
46	정종2.8.	先王憂服未闋	(減死)		斬絞二罪者除刑配無人島 雖犯二罪情有可矜者 配有人島	
47	정종3.4.	親禱	赦			
48	정종3.11.		宥		公杖罪以下	
49	정종4.7.		(減死)		降斬罪杖配無人島 絞罪杖配有人島	

50	정종5.11.	八關會	免之		公徒私杖以下及諸微贖	
51	정종9.4.	時雨愆期	原放		流罪以下	
52	정종9.5.		赦			
53	文宗즉위6.	卽位	大赦	神鳳樓		①
54	문종2.10	親禘	赦	還御神鳳樓		
55	문종4.4	謁陵	赦			
56	문종5.5.	旱	赦			
57	문종8.2.	世子冊封	大赦	神鳳樓		①
58	문종10.10	親禘	赦	還御神鳳樓		
59	문종12.7.	災變	原之		公徒私杖以下	①
60	문종13.4	親禘	赦			
61	문종16.8.	幸興王寺	赦		內外重刑並降從流配 公徒私杖以下咸赦除之	
62	문종21.2.	興王寺成	赦	神鳳樓		
63	문종22.5.	時雨愆期	原之		公流私徒以下罪	
64	문종34.6.	興王寺石塔成	赦			
65	문종34.11.	行幸(西京)	赦			
66	문종35.10.		赦			
67	문종36.6.		赦			①
68	順宗즉위11.	卽位	赦	神鳳樓		
69	宣宗즉위 11.	卽位	赦	神鳳樓		①
70	선종3.2.	太后冊封	大赦	神鳳樓		
71	선종3.4.	親禘	曲赦			
72	선종7.6.	時雨愆期	放		公徒私杖以下	①②
73	선종7.11.	行幸(三角山)	赦			
74	선종11.2.	天變	赦			
75	獻宗즉위 6.	卽位	大赦	神鳳樓		
76	현종1.9.	權姦謀亂伏誅 ⁴⁹⁾	免除		內外贖銅小罪	

【표 2】의 정리된 것들과 앞선 성종대에 실시된 사면들을 비교하면 기본 골격에서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평균 횟수를 비롯하여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⁵⁰⁾

첫째 동기면에서 송·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뒤에 행했던 것이 【표 2】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목종대 이후에도 거란으로부터 계속 책봉을 받았으나 그 때마다 사면은 실시되지 않았다.⁵¹⁾ 이는 당시 국제 질서의 변동과 함께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한 까닭이다.

책봉 받는 것이 여전히 국가의 중대사였다. 하지만 사면을 실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성종 15년(996) 거란의 책봉을 받은 뒤에 실시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는 1차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받은 것으로 이제부터 외교 관계가 송에서 거란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다.⁵²⁾ 그런 특별한 의미 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란이 등장하여 송과 병립하는 형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국제 질서가 다원화되자 고려에서는 책봉 받았다고 굳이 사면까지 실시해야 하는가의 의구심이 들었을 것이다. 특히 현종 10년 제3차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런 인식은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성종대 책봉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왕실의 위상을 확고히 한 다음 그에 입각하여 체제를 운영하겠다는 기본 구상은 후대에도 계승되었다. 하지만 국제 질서가 바뀔에 따라 실제 내용은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부터 고려의 주체적 입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48) 이는 『고려사절요』 권4, 덕종 1년 9월에 따른 것이고 『고려사』 권5, 세가 덕종 1년 9월에는 ‘錄內外囚, 放徒罪以下’로 기록되었다.

49) 이는 숙종이 李資義 일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실시한 것이다(『고려사』 권10, 세가 현종 1년 9월 무술). 과연 이것을 사면에 포함시킬 수 있는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시기 구분의 분곡점이 된다는 이유로 포함시켰다.

50) 98년간 60회가 실시돼 평균 1.6년당 1회씩 단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51) 沈載錫, 2002, 「고려와 遼의 책봉관계」, 『앞의 책』.

52) 위의 책, 104쪽.

사면을 통해 이런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43번 정종 1년 3월 王妃冊封에서 사, 57번 문종 8년 2월 世子冊封에서 대사, 70번 선종 3년 2월 太后冊封에서 대사의 실시로 구체화되었다.

이제부터 책봉을 받은 뒤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책봉을 내려 준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연히 사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려 왕실의 내부 행사가 더욱 중요하며 비중이 큰 것으로 인식하기 마련이었다. 더구나 57번·70번에서는 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위상을 더욱 높였다. 한편 36번 현종 22년 1월에 籍田을 親耕했다는 이유로 실시했는데, 성종대에는 이에 대해 사면을 실행하지 않았다.⁵³⁾ 이제부터 국왕이 국가 의례에 친히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심지어 44번 정종 1년 7월에 ‘先王憂服未闋’ 즉 선왕의 喪期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수들에 대한 減死를 단행하였다.⁵⁴⁾ 마찬가지로 46번 정종 2년 8월에도 선왕의 喪期를 마치지 못했으며 變怪가 있다는 이유로 사형수를 減死했다.⁵⁵⁾ 이들을 사면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후자에서 免死者가 116명에 달했다는 것을 보면 그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임금이 장례를 마치기 전까지는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인식과 위상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50번 팔관회 개최, 61번 興王寺 행차, 62번 興王寺 완공, 64번 興王寺 石塔의 완성에 각각 사면을 실시했다는 것도 성종대와 다른 부분이다. 최승로는 상소문을 통해 당시 불교의 폐해를 지적하고 불교 행사를

53) 성종대에도 籍田을 親耕했으나 사면은 실시하지 않았다(『고려사』 권3, 세가 정종 2년 1월 을해).

54) 『고려사』 권6, 세가 정종 1년 7월 경술

55) 『고려사』 권6, 세가 정종 2년 8월 병인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⁵⁶⁾ 이에 반해 불교 행사, 사찰 행차 및 건축 등에 대해 사면을 실시했다는 것은 그런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처였다. 특히 흥왕사의 건축과 관련해 문종대 기복적 종교행위를 이용하여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빌고 행위주제자·후원자로서 왕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다는 견해가 주목된다.⁵⁷⁾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불교 행사에 대해 사면을 실시했던 것도 결국 국왕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동기면에서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지만 국왕과 왕실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것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변모했다.

두 번째 종류에 있어서 용어상의 혼란이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대사, (상)사, 곡사라는 공식 용어 이외에 여러 단어들 이 마구 쓰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이들이 사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것이 『고려사』 등의 기록 오류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당국자들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자세한 분석은 생략하고 대략의 추세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고려사』 등에 ‘곡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71번 선종 3년 4월 親禱하면서 실시했던 때였다. 곡사는 일부 지역의 죄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면으로, 그 때 개경의 죄수들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⁵⁸⁾ 지금까지 親禱하면서 사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데⁵⁹⁾ 무슨 이유로 곡사를 실시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바로 2개월 전인 70번 선종 3년 2월에 태후 책봉으로 대사를 실시했던 것의 여파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태후 책봉이 親禱보다 격이 높았다는 것인데, 이는 항상적인 것이기 보다 일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실행

56) 金哲竣, 1990, 앞의 논문, 211~9쪽.

57) 채웅석, 1998, 「고려 문종대 관료의 사회적 위상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27, 132~3쪽.

58) 俞成國, 1997, 앞의 논문, 9~10쪽

59) 【표 1】은 물론이거니와 【표 2】의 28, 47, 54, 58, 60번에서 모두 ‘사’를 실시하였다.

했던 것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아무튼 왕실의 행사가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면의 종류에서도 임시적이었지만 관행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다음 【표 2】에서 공식 용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해서 사면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개 동기가 재변에 속한 것이 많았다. 30번 현종 7년 7월의 蝗害로 인한 出獄, 51번 정종 9년 4월 時雨愆期로 原放, 59번 문종 12년 7월 災變에 따른 原之, 63번 문종 22년 5월 時雨愆期로 原之, 72번 선종 7년 6월 時雨愆期로 放 등이 그것이다. 그들의 실제 내용 및 범위를 보면 공식 용어로 실시했을 때에 비해 격이 크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공식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치의 시급성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내렸던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정상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종의 비상조치로 실행했던 것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농업 사회에서 위와 같은 재변은 농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 아마도 당시 이런 즉각적인 비상조치로 해서 임금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국왕이 사면 실시를 통해 민심을 추수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51번 原放하고서 겨우 1개월이 지난 정종 9년 5월에 赦를 실시했다는 것은 비상에서 정식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잘 보여준 예라고 생각된다. 재변의 위험성을 인식해 즉각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마침내 현실화되자 정식 절차를 밟아 실시하지 않았는가 한다. 곧 국왕 통치력의 능동성을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장소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단지 38번 덕종 즉위년 6월 사면을 실시하면서 그 전의 威鳳樓에서 神鳳樓로 변경했을 뿐이다. 이때 ‘毬庭에 雞竿을 걸었다[揭雞竿于毬庭]’.⁶⁰⁾ 이는 중국의 당에서 사면하던

날에 금으로 장식한 닭의 모형을 儀仗의 남쪽에 세웠는데 깃대의 길이가 일곱 장이고 닭의 머리에 일곱 자 되는 붉은 깃발을 붙여서 알렸던 것을 재현했던 것으로 보인다.⁶¹⁾

그리고 54번 문종 2년 10월 太廟에서 친히 祫祭를 지내고 神鳳樓로 還御한 뒤에 사면령을 반포했다.⁶²⁾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의례의 개최 장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선포한 것이다. 사면의 실시를 널리 알려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었다. 선포 장소의 중요성은 여전하였다.

아울러 선포 의식 자체에 대한 의미가 커지면서 그 절차와 진행에 대한 의례화가 한층 진전되었다. 그것은 다음 단계의 정비 작업을 통해 국가적 의례인 오례 가운데 가례의 하나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⁶³⁾

네 번째 【표 2】의 내용 및 범위에서 나타난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37번 현종 22년 5월에 ‘公罪徒以下’를 사면하라는 것이었다.⁶⁴⁾ 문제는 公罪인데 이는 중국의 법제 용어에서 나온 것이다. 즉 공무를 처리하면서 범한 죄로 사사로움과 枉曲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과 대칭되는 私罪는 공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범한 죄를 의미하지만 공무상의 죄라도 의도에 사사로움이 개입된 경우에는 포함시켰다.⁶⁵⁾ 이들을 구분했던 이유는 같은 범죄라도 그 종류와 범행 의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특히 당률에서 그런 원칙이 확립돼 조문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때 동일하더라도 사죄가 공죄보다 무겁다고 여겨 처벌의 강도가

60) 『고려사』 권5, 세가 덕종 즉위년 6월 계묘

61) 『新唐書』 권48, 百官志 3 中尚書

62) 『고려사』 권7, 세가 문종 2년 10월 을해

63) 선포 장소가 神鳳樓에서 의종 즉위년 4월에 儀鳳樓로 바뀌었다(『고려사』 권17, 세가 의종 즉위년 4월 무오). 이를 계기로 의례화가 한층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제III장의 관련 내용 등을 참고할 것.

64) 『고려사』 권5, 세가 현종 22년 5월 무오

65) 김택민, 2002, 『동양법의 일반원칙』, 아카넷, 330~2쪽.

높았으며 자연히 사면받기도 그만큼 어려웠다.⁶⁶⁾

우선적으로 범행 의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누가 무엇 때문에 저질렀느냐를 정밀하게 따져 공·사죄로 구분해서 판결했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행형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앞선 시기에도 치죄했을 때 이 문제를 당연히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형량을 부과할 때 법규에 따라 공·사죄로 나눠 결정했는가, 아닌가의 차이는 컸다. 그것은 위 35번의 ‘公罪徒以下’를 사면하라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徒以下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던 자라도 私罪라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사죄의 구분이 처벌 뿐만 아니라 사면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당사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표 2】에서 현종대 이후에 실시된 사면의 내용과 범위에서 ‘公徒私杖以下’, ‘公杖罪以下’, ‘公流私徒以下’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당시 행형 체계에서 공·사죄의 구분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에 비해 공·사죄로 나눠 처벌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이전에는 죄지는 자를 처벌하더라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공공 부문의 성장과 함께 관료제의 운영이 사회의 저변에까지 침투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했을 것이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관리들의 업무 처리가 늘어나고 중요해지면서 구별이 불가피했다.

처벌하는데 공·사죄의 구분이 중요해졌다면 사면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행형의 체계화를 추동하게 했다. 관과 관련된 범죄를 처리하는데 공무에 해당되는가, 아닌가를 이전과 달리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판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표 2】의 은사에서는 목종·현종대의 경우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이후에는 꽤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덕종대

66) 윤훈표, 2002, 『고려시대 官人犯罪의 行刑 운영과 그 변화』, 『고려시대의 형법과 형정』, 국사편찬위원회, 102~3쪽.

이후에 대폭으로 축소되었음이 확인된다. 거기에는 이 시기 『고려사』 등의 관련 기록이 부실하게 정리된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53번 문종 즉위년 6월에 대사하면서 은전으로 좌천되거나 침체된 관인의 구제 조치에 해당하는 ‘凡有職者, 加一級’하나만 하라고 되어 있었다.⁶⁷⁾

하지만 다른 자료에 의거하면 그 이외의 조치들도 있었다. 실제로 문종 2년 3월의 御史臺奏에 따르면 ‘丙戌年(문종 즉위)의 죄수를 사면하고 백성을 구제하라는 조목 가운데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은 빨리 攸司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라고 했고, 또한 赦書에서 일체의 토목 공사는 3년 동안 정지하라[其丙戌年肆赦 頒示賑濟條畫內 可行之事 未得施行者 速令 攸司舉行 … 又況赦書云 一切土木之役 限三年停罷].’⁶⁸⁾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문종 즉위년 6월의 대사에서 은전에 관한 조치가 ‘凡有職者, 加一級’ 이외에 더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고려사』 등의 관련 기록이 부실하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이 밖에도 그런 사례들이 더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에서 덕종대 이후 은전이 크게 축소된 것은 여전히 의아하다. 관련 자료나 기록의 부실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특히 그 추이를 보면 어쨌든 관인의 구제 조치에 대한 것은 간혹이나마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나, 경제적인 시혜, 유교윤리 창달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시혜의 경우 72번 선종 7년 6월에만 실행되었을 뿐이다. 특히 고려의 최전성기라고 일컬어지는 문종대에 들어와 사면을 실시하면서 경제적인 시혜, 유교윤리 창달에 해당되는 은전의 실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서술했던 내용과 범위에서 지적했던 바, 이전과

67) 『고려사』 권7, 세가 문종 즉위년 6월 정묘

68) 『고려사』 권7, 세가 문종 2년 3월 경자

달리 공·사죄로 구분해서 처벌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는 다시 사면 실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그 동안 공·사죄를 분간해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점차 공공 부문의 성장과 함께 관료제의 운영이 사회의 저변까지 파고들면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불가피해졌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관리들의 업무 처리가 늘어나고 중요해지면서 공무 여부의 분별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공공 부문에서의 성장은 관료들의 지위 안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행형 체계에서 공·사죄의 구분은 바로 그 같은 변화의 반영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위 안정을 위해 사면 실시에서 은전을 행할 때 좌천되거나 침체된 관인의 구제에 해당되는 조치를 포함시켜야 했다. 하지만 관료들의 지위 안정은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경제적 대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관료들의 지위가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의 감축이 염려되는 경제적인 시혜, 유교윤리 창달에 관한 것이 이 시기에 행해지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내용과 범위, 그리고 은전의 종류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사면이 실시되었으며 그 균형이 가장 뚜렷하게 전개되었던 시기가 최전성기인 문종대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송과 요가 병립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의 주체적인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특히 왕실을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그것은 사면의 실시, 특히 동기면에서 분명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 들어와 공공 부문의 성장과 함께 관료들의 지위도 점차 굳건해지기 시작했다. 그에 힘입어 행형 체계가 새롭게 개편되었는데 사면 실시의 내용과 범위에서, 그리고 병행된 은전의 종류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Ⅲ. 숙종~의종대 실행상의 문제점과 행형 체계의 혼란 조성

숙종대에서 의종대에 이르는 사면 실시는 【표 3】으로 정리하였다.⁶⁹⁾

【표 3】 숙종~의종대의 사면

번호	선포연월	동기	종류	장소	내용 및 범위	은전
77	肅宗즉위11.	卽位	赦	神鳳樓	斬絞以下罪	①② ③⑥
78	숙종3.10.	裕享	赦	還御神鳳門	二罪以下	①②⑥
79	숙종4.10.	行幸 (三角山)	赦			
80	숙종5.2.		赦	神鳳樓	二罪以下	①② ③⑥
81	숙종7.6.	虫害	赦		今日以前内外公徒私杖以下 雜罪	
82	숙종7.11.	行幸(西京)	赦			①②⑥
83	睿宗즉위11.	卽位	赦	神鳳樓		
84	예종1.6.	旱	赦		流以下罪	
85	예종3.2.	太后冊封	赦	神鳳樓	内外斬絞二罪除刑付處 以下 皆原之	①③⑥
86	예종3.4.	親禱	赦		公流私徒以下皆原之 斬絞二 罪除刑流配 諸歸配者量移乃 至鉞用	①⑥
87	예종4.5.	(女眞征伐)	赦		犯流以下咸自除之 二罪以上 除刑付處 雜犯流配者量移乃 至鉞用	
88	예종5.6.	乾文變怪	赦		犯流以下並除免之 二罪以上	

69) 【표 1】에서 밝힌 원칙대로 정리했으며 은전도 ① 좌천되거나 침체된 官人의 구제 조치, ② 경제적인 시혜, ③ 유교윤리 창달, ④ 승려나 도사의 배려, ⑤ 老人의 관직 수여, 그리고 ⑥ 고려 특유의 山川海濱等の 爵號昇級 등의 동일한 원숫자로 표시했다.

					除刑付處 曾坐罪流謫者 並皆量移 以至敘用	
89	예종5.11.	行幸(南京)	赦			
90	예종6.1.		赦	御乾德殿	斬絞者免刑流配 流以下並赦之	①③
91	예종9.1.		赦			
92	예종9.10	親裕	赦			
93	예종10.3.	太子冊封	赦	御神鳳門		
94	예종11.3.	天壽寺成	赦			
95	예종11.4.	行幸(西京)	赦		公徒私杖以下罪	①②③ ④⑥
96	예종15.11.	行幸(西京)	赦			
97	예종16.윤5.	旱	原之		除斬絞二罪外皆原之	
98	예종17.4.	不豫	原之		除斬絞外皆原之 流配者量移	⑥
99	仁宗즉위.5.	卽位	赦	御神鳳門		
100	인종1.12.		赦			③⑥
101	인종2.8.	朝鮮國公(李資謙)冊封	大赦	神鳳樓	斬絞二罪以下	①③⑥
102	인종3.3.	行幸(興聖寺)	赦			
103	인종4.3.	以李·拓之黨謂之衛社	赦		斬絞以下	
104	인종4.윤11.		赦		犯二罪者免刑流之 犯流以下免罪	③
105	인종6.4.	天文有變	赦		二罪以下	③④⑥
106	인종7.3.	行幸(西京)	赦		犯死罪者流配 犯流以下原之 曾配流者除不赦重罪外 並皆量移	①③⑥
107	인종8.10.	行幸(西京)	赦		其犯死罪除刑流配 流以下原之 曾配流者有之 其不可除者許令量移	①③⑥
108	인종9.7.		(減死)		慮囚 減死罪五十六人杖配有人島	
109	인종10.윤4.	行幸(西京)	赦			

고려 전기 사면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110	인종11.3.	太子冊封	赦			
111	인종12.5.	旱災	赦		犯二罪除刑遠流 流以下罪悉皆原免	
112	인종14.5.	西京平	赦		犯大辟以下悉皆原之	①
113	인종16.5.		赦		自五月十六日昧爽前內外大辟以下罪悉原之 前配流者量移	
114	인종17.2.	(宮禁)重修	大赦		自大辟以下罪悉原之	
115	인종18.4.	親禘	赦		公流私徒以下罪者悉原之 二罪以上除刑流配 前流配者量移	
116	인종20.10.	親享	赦			
117	인종22.1.	親耕籍田	赦			
118	인종24.1.	不豫	赦			
119	인종24.2.	不豫	赦			
120	毅宗즉위.4.	卽位	大赦	儀鳳樓		
121	의종2.7.	太后冊封	大赦			①
122	의종2.10.	親禘	赦			
123	의종4.9.	行幸(南京)	赦			
124	의종7.4.	太子冊封	赦			①
125	의종8.4.	親禘	赦			
126	의종10.4.	行幸(興王寺)	赦		大辟以下	
127	의종10.8.	彗星	赦		二罪以下 流者量移	
128	의종11.4.	離宮成	曲赦	御觀瀾亭	二罪以下	
129	의종12.3.	日食	赦		降死罪流以下原之 又赦西京叛逆充爲奴婢者	
130	의종12.11.	行幸(還宮)	赦			
131	의종15.7.	行幸(還宮)	赦			
132	의종16.5.		赦		殊死以下	①②
133	의종17.4.	親禘	赦		殊死以下	①
134	의종18.4.	親禘	赦			
135	의종21.9.	行幸(南京)	赦		二罪以下	①③
136	의종22.4.	行幸(西都)	放除		公徒私杖以下贖銅微瓦 並皆放除	
137	의종23.4.	行幸(西都)	赦		二罪以下	①③⑥

위 【표 3】에 정리된 숙종~의종대에 실시된 것과 앞선 목종~헌종대의 것을 단순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현종, 문종대를 거치며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바뀐 것들이 없지 않았다. 일단 실시 횟수를 보면 75년간 61회, 즉 1.2년에 1회로서 그만큼 자주 행해졌음이 확인된다.⁷⁰⁾ 그것은 당시 사회가 여러 방면으로 갈등과 대립이 커지면서 복잡해졌음을 의미했다.⁷¹⁾

먼저 동기면에서 행행의 비율이 전에 비해 늘었다. 시간이 갈수록, 특히 인종~의종대에 들어와서 증가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주지하듯이 이자겸의 난, 서경 천도와 묘청의 반란, 의종의 폐정 등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점차 가중되었다. 국왕과 집권층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만을 해소시켜 관심사를 다른 방면으로 돌리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했다. 마침내 그 중의 하나로 사면을 택했는데, 그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동기로 행행이 대두되었다.⁷²⁾

사면의 동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행행만큼 효과적인 것은 찾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개경뿐만 아니라 외방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효용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았다. 더구나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70) 목종~헌종대에서는 98년간 60회로, 1.6년당 1회 실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71) 실시 빈도와 정치적 긴장 정도가 관계 깊은 것은 고려 전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체로 남발하는 것이 정치적 긴장이 높거나 불안 요소가 常在해 있음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한다(任大熙, 1990, 앞의 논문, 60~1쪽).
72) 이에 해당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136번 의종 22년 4월 서도(서경)에 행차하면서 실시했던 사면을 들 수 있다. 이때 그 계기는 자신의 同母弟인 翼陽侯와 平涼侯가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자 장차 변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피하고자 서경으로 행차했던 것이었다(『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22년 3월 정축). 그리고 얼마 뒤에 폐단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6개조의 新命을 반포하였다(『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22년 3월 무자). 그리고 다음 달 4월에 사면을 단행했다(『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22년 4월 기해). 결국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불만, 불평 등을 완화시키고자 서경을 방문하여 여러 시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사면의 실시였다.

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밖에 다른 시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감옥이 텅 비는 ‘獄空’ 현상이 당시 종종 발생했다. 사회가 갑자기 평온해진 것도 아니고 죄수들이 급속하게 줄어든 것도 아니었는데 일어났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78번 숙종 3년 10월에 太廟에 裕享하고서 사면을 실시했는데,⁷³⁾ 이윽고 상서형부에서 ‘옥공’이 되었다고 보고하자 재상 등이 이를 축하하는 表文을 올렸다.⁷⁴⁾ 이어 83번 예종 즉위년 11월에 즉위하고서 사면을 실시했다.⁷⁵⁾ 며칠 뒤 어사대에서 감옥이 텅 비었다며 ‘옥공’ 두 글자를 써서 法司의 南街에 게시할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는 사면령의 반포로 인해 감옥이 텅 비게 되었던 것뿐이라며 당대인들은 오히려 비판하기도 했다. 다시 121번 의종 2년 7월에 태후를 책봉하고 대사를 실시했다.⁷⁶⁾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옥공’이 되었다며 전옥서에서 5일간 般若道場을 개설했다.⁷⁷⁾

사면을 실시하면 감옥이 비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처럼 감옥이 비었다 [옥공]고 특별하게 내세운 것은 아마도 그 실효성을 널리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한다.⁷⁸⁾ 이전에는 사면을 실시해도 반드시 감옥이 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텅 비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 했다. 결국 사면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의 소산물이었다. 이 바뀔을 전제로 행행을 동기 삼아 외방에까지 전파시킴으로써 국왕의 위신을 높이고 갈등과 대립, 불만 따위를 해소하고자 했다.

73) 『고려사』 권11, 세가 숙종 3년 10월 갑신

74) 『고려사』 권11, 세가 숙종 3년 10월 신축

75) 『고려사』 권12, 세가 예종 즉위년 11월 임인

76) 『고려사』 권17, 세가 의종 2년 7월 을해

77) 『고려사』 권17, 세가 의종 2년 8월 기축

78) ‘옥공’은 그 뒤 고종 11년 4월에 한 번 더 일어났을 뿐이다. 심지어 당시 아무런 의식도 거행하지 않았다(『고려사』 권22, 세가 고종 11년 4월 임신).

그러나 사면을 너무 자주 실시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무엇보다 행형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었다. 자연히 실시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왕조차 王統의 『中說』에 나오는 ‘사면이 없는 국가라야 형벌이 반드시 공평하다[無赦之國刑必平]’라는 구절을 언급하면서도 끝내 불가피하다며 강행했다.⁷⁹⁾ 그만큼 당시 상황에서 사면의 실시가 긴요했음을 의미했다. 국왕도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결국 강행하였다.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사면이 자주 실시되었으며, 그것은 결국 행형이라는 동기의 증거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방에까지 전파할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87번 예종 4년 5월의 여진정벌, 101번 인종 2년 8월의 조선국 공(이자겸) 책봉, 103번 인종 4년 3월의 李·拓之黨, 즉 이자겸·척준경 일파의 책훈,⁸⁰⁾ 112번 인종 14년 5월의 서경 평정(묘청의 반란 진압) 등도 모두 복잡한 상황에서 단행된 것들이다. 이 시기 잦은 실시는 정치 상황의 복잡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곧 내적으로 혼란과 동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종류면에서 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다만 128번 의종 11년 4월에 離宮이 조성되었다며 관란정에 나아가 곡사한 것이 특이하다.⁸¹⁾ 여러 이궁을 무분별하게 짓고 자주 행차한 것이 의종대 폐정의 하나였음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곡사라고 선포해서, 즉 규모를 축소하여 실시함으로써 비난을 면하고자 했다.⁸²⁾ 하지만 이 또한 앞서 동기면에서 검토한 것처럼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혼란과 동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사면했다고 해서 분별

79) 『고려사』 권16, 세가 인종 14년 5월 기묘

80) 『고려사』 권15, 세가 인종 4년 3월 을미

81) 『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11년 4월 임인

82) 俞成國, 1997, 앞의 논문, 10~1쪽.

없는 건축 행위와 나들이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⁸³⁾

한편 108번 인종 9년 7월 慮囚하면서 死罪를 범한 56인을 有人島로 杖配하라고 했던 것을 赦로 간주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⁸⁴⁾ 개념적으로 죄수를 보살펴주는 것에 해당하는 慮囚에 포함시키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赦라고 단정 짓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아마도 그 경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기적인 추이와 특징, 즉 이때 사면이 너무 잦았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포함시켰다.

셋째 장소인데, 120번 의종 즉위년 4월에 그 간의 神鳳樓에서 儀鳳樓로 바꾸었다.⁸⁵⁾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의봉루는 신봉루였다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延慶宮의 大樓였다고 한다. 태묘에서 제사지내거나 연등대회와 팔관회 때에는 임금이 이 樓에 나와 鷄竿을 게시하고 大赦하기도 하며 中外에 大酺宴을 하사하기도 했다고 한다.⁸⁶⁾ 鷄竿을 게시했다는 것은 Ⅱ장에서 언급했던 38번 덕종 즉위년 6월 사면을 실시하면서 ‘揭雞竿于毬庭’⁸⁷⁾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의봉루로 명칭을 변경했던 것과 함께 주목되는 점은 사면의 실시가 마침내 국가 의례인 오례 가운데 가례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의봉문에서 赦書를 선포하는 의식[儀鳳門宣赦書儀]

이틀 전에 都校승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儀鳳門 동남쪽에 金鷄竿을 세우고 讀詔臺는 계간의 서쪽, 儀鳳樓의 남쪽에 설치한다. 中尙署에서는

83) 河炫綱, 1988, 「高麗 毅宗代의 性格」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84) 『고려사』 권16, 세가 인종 9년 7월 계묘

85) 『고려사』 권17, 세가 의종 즉위년 4월 무오

8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 개성부 하

87) 『고려사』 권5, 세가 덕종 즉위년 6월 계묘

독조대 위 북향으로 탁자를 놓는다. 예식 하루 전 尙舍局에서는 의봉루의 위에 幄次를 친다. 尙書禮部에서는 監門衛로 하여금 毬庭에 大鼓를 설치하게 하는데 동서로 각각 15개를 양반의 행렬 밖에 놓는다. 유사에서는 시위 및 의장, 鹵簿를 진열하는데 평상시의 의례와 같다. 閣門에서는 문무백관이 의봉문 앞에 板位를 설치하고 재신·추밀 이하 侍臣과 문무백관은 모두 정해진 자리로 가서 의례를 익힌다.…88)

이로써 사면 실시가 국가 의례의 하나로 확고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위 인용문에서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의종대에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자료가 있다. 즉 의봉문에서 사면령을 반포할 때 착용했던 왕의 복식이 의종대에 詳定되었다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89)

내용이나 성격으로 보아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사면 실시의 절차와 과정이 의종대에 이르러 가례의 하나로 정리되는 것과 동시에 그 때 입어야 할 임금의 복식도 함께 규정되었을 것이다. 분리돼 따로 정해질 수도 있겠으나 같은 시기에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90)

대개 의종대에 이르러 사면을 실시할 때의 절차와 과정이 국가 의례화되었을 것이다. 이는 체계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수준에 이르면서 운영에 있어 완숙의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내용과 범위인데 이전과 비교해서 외형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런데 113번 인종 16년 5월 有司에 錄囚하라며 내린 詔에는 ‘自五月十六日昧爽前, 内外大辟以下罪, 悉原之, 前配流者量移’하라고 했다.91)

88) 『고려사』 권68, 예지 10 가례 儀鳳門宣赦書儀

89) 『고려사』 권72, 여복지 1 冠服 視朝之服

90) 하지만 고려시대의 오례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례의 경우 인종대 최윤의 등에 의해서 편찬된 『고금상정례』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李範稷, 1991, 「高麗時期的五禮」,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91) 『고려사』 권16, 세가 인종 16년 5월 경자

한편 제 I 장에서 언급했던 7번 성종 2년 3월의 조에는 ‘自大平興國八年三月二十二日昧爽前,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犯罪人, 相鬪殺以下罪, 無輕重, 皆悉赦之’하라고 했다.⁹²⁾ 양쪽을 단순 비교하면, 성종대가 훨씬 짜임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에는 연대 표시도 없고 발각이나 판결의 여부에 대한 표현도 생략되었다. 錄囚하라고 詔를 내렸기 때문인지 몰라도 赦文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대목들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 그것은 『고려사』 등의 편찬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류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요인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인종대의 사실들이 주로 언급되었을 『고려도경』에 따르면 ‘해마다 8월에 慮囚하는데 고려인의 본성이 본래 인자하여[夷性本仁]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관대히 다스리는 경우가 많아 산이나 섬으로 유배 보낸다. 사면할 때는 세월의 오래됨과 가까움, 죄의 경중을 헤아린 후에 용서한다.’라고 했다.⁹³⁾

『고려도경』의 저자 서공은 사형에 해당돼도 관대하게 처벌해서 유배 보내는 것이 ‘고려인의 인자한 본성[夷性本仁]’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공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며, 그 위에 다른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 제도와 운영면에서 체계화되고 완숙되었다고 일컬어졌던 인종대에 내용 및 범위면에서 성종대의 그것에 비해 다소 간략해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 특이하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에서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적 목표, 특히 서공이 『고려도경』에서 기술했던 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사면을 자주 실시하게 되고 관대한 처벌도 빈번하게 이

92)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2년 3월 무인

93)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6, 官府 囹圄

루어진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 赦文의 내용과 범위도 다소 간략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사면 실시에 있어 제도나 운영상에 혼란이 왔던 것은 아니었다. 내용과 범위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듯이, 즉 ‘公徒私杖’, ‘公流私徒’ 등과 같이 범죄 내용과 의도를 헤아려 공·사죄로 구분하되 그에 맞추어 형량도 부과하며 이것이 사면에도 반영되도록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대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마지막 은전의 경우 그 추세를 보면 【표 2】의 목종~현종, 특히 문종 대보다는 늘었음이 확인된다. 사면 실시의 평균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당연했다. 그러나 이 시기 정치 상황의 복잡성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사면을 통해 형벌을 감해주는 것 외에 종종 은전을 베풀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추세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시기의 은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단지 그 추세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해 시기별 특징을 짐작할 뿐이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인종대 후반에서 의종대에 걸쳐 은전이 상당히 축소된다는 사실이다. 인종대 전반 이전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줄어드는 가운데 좌천되거나 침체된 관인의 구제 조치, 유교윤리 창달 등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시혜는 매우 드물어졌다. 유교윤리 창달과 관련해서 양로와 환과고독 등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사례는 간혹 보인다. 하지만 경제적인 시혜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와 역역, 부채 등의 감축과 탕감 등의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 시기 은전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종대 후반 이후 은전, 특히 경제적인 시혜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자점의 난과 그로 인해 소실된 궁궐의 복구, 서경 천도의 추진과 묘청의 반란 진압 등으로 국가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 의종대에 들어오면 폐정으로 재정은 더욱 악화

되었다. 이로 인해 사면을 실시할 때 내려야 할 은전 중에서 가급적 경제적인 시혜는 제외시켜야 했을 것이다. 이전 시기에 비해 평균적으로 사면을 자주 실시하는데 그 때마다 은전으로 경제적인 시혜 조치를 베푼다는 것은 재정을 거의 파탄 수준으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곤란했다.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머지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초래될 것이었다.

은전 중에서 좌천되거나 침체된 관인의 구제는 어떤 형태로든 연속적으로 단행되어야 했다. 내용과 범위의 측면에서 보듯이 공·사회의 구분에 따른 처벌 등의 행형 체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사회 저변에 안착되었다. 다른 각도로 보면, 공공 부문이 성장하며 관인들의 업무가 중요해지고 지위도 동시에 높아졌음을 의미했다. 드디어 관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 사회가 한층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자연히 사면 실시에서도 은전에 관한 한 이들에 대한 대우가 우선적으로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중앙집권체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관료제는 결국 관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 사회가 확고하게 구축됨으로써 안정화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관료들의 업무에 대한 권한이 커지면서 권력도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집중된다. 그에 따른 부패도 증가하므로 이를 다스리는 행형 체계도 정비되어야 했다. 숙종~의종대에는 정비 작업이 비교적 충실하게 행해짐으로써 제도와 그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완숙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관인들의 위상이 높아짐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행형 체계도 공·사회의 구분에서 보듯이 나름 짜임새 있게 작동하였다. 하지만 처벌이 전부가 아니었다. 지나치면 관인들의 지위 하락을 초래하고 더욱 심해지면 관료제, 신분제를 혼란시킬 수도 있었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했다. 그것이 곧 사면의 실시로 구체화되었고, 이때 더불어 은전을 베풀어야 했다.

마침내 사면을 실시하면서 은전의 형태로 좌천되거나 침체된 관인의 구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간혹 저변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유교윤리

창달이라는 명목으로 빈민을 돕는 조치도 가끔씩 실행되었다. 그러나 궁극적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시혜를 베풀어야 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나 불균등을 완화시켜 사회적 불평·불만을 다소라도 줄여야 했다. 하지만 이 시기 국가 재정의 곤란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균형이 무너지고 말았다.

균형의 상실은 결과적으로 사면의 실시를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의 상징처럼 만들었다. 오히려 불신과 불화를 조장해서 원래의 취지였던 ‘억울함이 퍼져서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⁹⁴⁾는 것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것은 곧 안으로 체제를 동요케 하고 흔들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맺음말

고려 전기의 사면 실시 특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그에 입각하여 당시 행형 체계 수립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하한선을 의종대로 설정했는데 그 때까지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3시기로 세분하여 검토했다.

제1기를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로 설정했다. 기간 중 실시의 70% 정도를 점했던 성종대에 집중해서 분석했다. 송·거란의 책봉을 받았다고 실시한 것은 성종대가 유일했다. 행형 체계의 정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중국·신라 등의 형태를 참고하여 사면 실시의 기본 골격을 갖추는데 진력했다. 책봉 받고 외방에 행행하면서 사면하는 것을 통해 국내외의 정연한 질서 속에서 고려 왕실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전제로 체계적 운영을 도모했다.

94)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년 6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중앙집권체제의 토대가 되는 신분제의 동요를 막고자 사면을 실시하여 소외되거나 탈락된 일부 지배층을 구제했다. 더불어 경제적 시혜나 유교윤리 창달에 의한 빈민 구제 등의 은전을 베풀어 외방까지 혜택이 고루 미치도록 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행형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불평·불만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그로 인해 당시 한창 정비 중이었던 행형 체계를 다른 각도에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제2기는 목종대부터 현종대까지로, 대개 성종대에 이룩된 기본 골격을 토대로 실시했다. 하지만 현종대에서 문종대를 거치면서 개편이 이루어져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것도 있다. 책봉을 받았다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태후 책봉 등 왕실 행사로 인해 사면이 단행되었다. 이로써 고려의 주체적 입장이 강조되었으며 실제 혜택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종대부터 사면할 때 공·사죄를 분간하기 시작했다. 범행 의도에서 공무상의 사사로움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처벌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공공 부문의 성장과 함께 관료제의 운영이 사회 저변에까지 침투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는 곧 바로 행형에서의 공무 관련 사항들의 비중을 증대시켰다. 심지어 사면에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널리 확산되었음을 의미했다.

공공 부문의 성장은 관료들의 지위 안정을 전제로 한다. 경제적 대우를 확실히 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부담은 늘었다. 이 시기 사면에 영향을 끼쳐 관인들의 구제 조치는 증가하고 경제적 시혜나 유교윤리 창달을 위한 구휼 등은 축소되었다. 문종대 양자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제3기는 숙종대에서 의종대로 앞선 시기보다 평균실시 횟수가 늘었다.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자주 실시되었다. 이 시기 만연했던 집권층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불만을 해소시켜 다른 방향으로 관심사를 돌리기 위한 비상조치의 하나로 사면을 택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동기면에서 행행이 늘었다. 비교적 쉽게 실시 명분을 쌓을 수 있고 외방까지 전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와 운영면에서는 오히려 이전 보다 정비되었다. 사면 실시가 국가 의례인 오례 가운데 가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것을 거행하면서 착용했던 국왕의 복식도 정해졌다. 절차나 과정 모두 완숙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배층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면을 자주 실시하면서 내린 은전에서 좌천되거나 침체된 관인의 구제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반면에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나 불균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경제적인 시혜는 크게 감소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균형이 무너졌다.

균형의 상실이 사면의 실시를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의 상징처럼 만들었다. 불신과 불화를 조장해서 ‘억울함이 퍼져서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그것은 안으로 체제를 동요케 하고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1. 사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선화봉사고려도경』, 『삼국사기』,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2. 논저

- 김난옥, 2003, 「高麗前期의 流配刑」 『韓國史研究』 121
- 김신해, 2015, 「고려 예종대 ‘恩賜’ 정책의 유형과 정치적 성격」 『한국사학보』
58
- 金龍善, 1993,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出版部
- 金哲垞, 1990,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 『韓國史學史研究』, 서울大學校出
版部
- 김택민, 2002, 『동양법의 일반원칙』, 아카넷
- 김호동, 2007, 「고려울령에 관한 연구현황」 『民族文化論叢』 37
- 文炯萬, 1964, 「麗代歸鄉考」 『歷史學報』 23
- 박은경, 1992, 「高麗時代 歸鄉刑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79
- 朴宗基, 1992, 「12세기 高麗 政治史 研究論」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
史學論叢』, 一潮閣
- 朴天植, 1991, 「高麗土族의 形成·發展과 階層構造(下)」 『國史館論叢』 29
- 辛虎雄, 1992, 「高麗時代의 赦免制度」 『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95, 『高麗法制史研究』, 國學資料院, 재수록
- 辛虎雄, 1995, 『高麗法制史研究』, 國學資料院
- 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 오희은, 2016, 「고려시대 "연고지 유배형"의 성격과 전개」 『韓國史論』 62
서울大 國史學科

사학연구 제130호(2018. 6)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10, 『고려시대 울령의 복원과 정리』, 경인 문화사
- 俞成國, 1997, 「高麗時代의 赦免制度」, 『延世法學研究』 4
- 윤훈표, 2002, 「고려시대 官人犯罪의 行刑 운영과 그 변화」 『고려시대의 형 법과 형정』, 국사편찬위원회
- 윤훈표, 2002, 「高麗時代 軍律의 構造와 그 性格」 『史學研究』 69
- 윤훈표, 2004, 「법과 규범, 관행에 대한 의식」 『東方學志』 124
- 윤훈표, 2008, 「조선초기 階級法 運用에 관한 試論的 考察」 『歷史와 實學』, 37
- 李範稷, 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 李世賢, 1975, 「麗代 諸王의 天變觀과 恤刑」 『群山大學論文集』 8-1
- 李熙德, 1977, 「高麗時代의 天文觀과 儒敎主義 政治理念」 『韓國史研究』 17
- 任大熙, 1990, 「恩赦實施를 通하여 본 唐代政治」 『大丘史學』 40
- 전영섭, 2012, 「唐宋元·高麗의 恤刑 立法原則과 刑政認識-홀형사상의 原流와 관련하여」 『중국사연구』 77
- 蔡雄錫, 1983, 「高麗時代의 歸鄉刑과 充常戶刑」 『韓國史論』 9, 서울大 國史學科
- 채웅석, 1998, 「고려 문종대 관료의 사회적 위상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27
- 채웅석, 2009, 『『고려사』 형법지 역주』, 신서원
- 채웅석, 2009, 「고려시대 刑政의 ‘原情’認識과 「月令」 활용」 『한국중세사연구』 27
- 채웅석, 2012, 「고려 말 권근(權近)의 유배(流配)·종편(從便) 생활과 교유」 『역사와 현실』 84
- 河炫綱, 1988,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 韓容根, 1986, 「高麗時代의 赦에 關한 研究」 『慶熙史學』 12·13
- 韓容根, 1998, 『高麗律』, 書景文化社

고려 전기 사면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한정수 편, 2010, 『월령과 국가』, 민속원

北村秀人, 1976, 「高麗時代の歸郷刑・充常戸刑について」 『朝鮮學報』 81

石川重雄, 2007, 「高麗時代の 恤刑-慮囚・疏決・獄空을 중심으로-」 『民族
文化論叢』 37

浜中昇, 1980, 「高麗における唐律の繼受と歸郷刑・充常戸刑」 『歴史學研究』
483

Abstrac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mnesty in the Early Goryeo Period

Yoon, Hoon Pyo

First of all, in this thesis,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 of various pardon in the early Goryeo dynasty was looked into. Also, based on such conten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entence system has been studied.

After finalizing the task of unifying the Later Three Kingdoms, The Goryeo administration continued to revamp the authorizing system overall. Among the tasks was reorganizing the sentence system. However, under the name of national integration and gathering citizen's voice in such period, pardoning criminals was implemented. Due to such order, confusion and issues risen from the sentence system.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The Goryeo administration needed to set a firm principle for implementing pardon.

Pardon has been implemented since King T'aejo. Other monarchs who worshipped him declared such pardon several times after. However, during such incidents, several issues occurred. As the fairness and liability on the pardon plummeted lots of complaints and rage occurred. It was due to the random implementation rather than implementing in the right order and form.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that occurred due to the pardon, they needed a revamp linked to the sentence system. It is because punishing criminals and

pardoning is directly linked together.

At last, by the era of King Seongjong who accepted the Confucian politics system, the basic principles of pardon such as the terminology, reason of pardon, scope, reinstatement or social special favor etc has been set up.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pardon implementation, it was hard to set it up completely. The pardon differed by the political situation as it went along. In such point, pardon was different from sentence system.

Nevertheless, the reason and fairness of pardon had to be kept thoroughly. If that has any issues, confusion and rage could occur. However, the debate on reason and fairness went on forever as time went by. During such progress, pardons were implemented more frequently and the content became full.

The reason of such frequent pardon lies in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ation system in terms of politics and in terms of social economic terms, the progress of agriculture and the changes in the family dynamics.

Keywords : amnesty, the Early Goryeo Period, sentence system, King Seongjong, social special favor

